



##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정일	2005. 5.17
개정일	2024. 3. 1
개정차수	13차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0)
- 제 2조 (기능)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 효율성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2.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재정 지원
  4.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
  5. 산업체 재직자와 물적, 인적 교류 관련 (개정 2022. 3. 1)
  6.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공유, 협업 관련 (신설 2022. 3. 1)
  7.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가치창출 관련 (신설 2022. 3. 1)
  8.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신설 2022. 3. 1)
  9. 공동장비 운영 관련 (신설 2022. 3. 1)
  10. 계약학과 운영 관련 (신설 2022. 3. 1)
  1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3. 1)

### 제 2 장 조 직

- 제 4조 (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둔다.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산학협력단을 대표한다.
- ③ 산학협력단에는 책임교수 및 상생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8. 1, 개정 2022. 9. 1)
- 제 5조 (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산업지원센터, 공유협업지원센터, 공용장비운영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3. 3. 1, 2022. 3. 1, 2022.12. 1, 2024. 3. 1)
- ②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1)
- 제 6조 (임면) ① 단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3. 1)
- ② 센터장은 전임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3. 1)

③ 책임교수 및 상생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2. 8. 1, 개정 2022. 9. 1)

제 7조 (산학협력단 교직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산학협력단의 업무뿐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 등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8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산학취업처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 감사이며,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4.11. 1, 2021. 4.15)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2 (자체평가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교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1]

제 9조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연간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한 결과평가 및 환류 (개정 2013. 3. 1)
7.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1)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장삭제 2013. 3. 1]

제11조~제20조 (삭제 2013. 3. 1)

## 제 5 장 [장삭제 2013. 3. 1]

제21조~제30조 (삭제 2013. 3.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